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8년 12월 3일

ISSN 1976-0507 Vol. 2 No. 42

중·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jina7@kiep.go.kr, Tel: 3460-1098)

- 2008년 10월 23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베이징에서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SFTA)에 서명함.
 - CS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미가 있음.
- 상품무역 부문에서는 중-ASEAN FTA(ACFTA) 상품협상을 기본으로 하여 더 가속화된 관세 삭감 계획을 제출하였음.
 -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2010년까지 9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의 대상가포르 수출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영관세를 적용하게 됨.
- 서비스무역 부문에서 양국은 비즈니스 서비스, 병원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WTO와 ACFTA보다 더 진전된 양허안을 작성하였음.
- CSFTA는 대체적으로 ACFTA보다 조금 더 진전된 개방을 이루었으나, 기대보다 개방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인력이동 부문에 있어서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업방문자에게 임시입국을 허용하고, 싱가포르가 임시입국의 범위를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CSFTA에서 개방의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1. 중·싱가포르 FTA 체결

가. 중·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 2008년 10월 23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베이징에서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SFTA)에 서명함.
- CSFTA는 2006년 8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9월까지 총 8차의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2009년 1월 발효될 예정임.
- 중·싱가포르 FTA 협상은 원래 2004년부터 논의되었으나, 당시 싱가포르 차기 총리후보였던 부총리 리셴룽(李顯龍)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는 후, 베이징이 양국 FTA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로 인해 중·싱가포르 간 FTA 협상 개시가 2년 넘게 지연되었고, 개시 후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 CSFTA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¹⁾ 인력이동, 세관절차, 무역구제, TBT 및 SPS, 경제협력과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ASEAN 국가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량이 최대인 국가이며, CSFTA는 중국이 체결한 네 번째 양자 FTA임.²⁾
- CS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의가 있음.
-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중-ASEAN FTA라는 다자적 FTA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다시 양자 FTA를 체결하였음.
- 양자간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중-ASEAN FTA의 다자간 협상들의 개방속도보다 더 빠르고 폭넓은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1) 투자 장은 현재 협상 진행 중인 중-ASEAN FTA의 협상 결과에 따르도록 하였음.

2) 중·홍콩, 중·마카오 CEPA는 제외함.

글상자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중국은 2003년 이래,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 아래 적극적으로 FTA 추진정책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및 지역과 12개의 FTA를 진행하였고, 이는 2007년 중국 총 대외무역액의 1/4을 차지함.³⁾

표. 1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국가
1단계	한국, 인도, 코스타리카
2단계	호주, 걸프협력회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3단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주: 1단계 - FTA 타당성 공동연구 및 고려 단계.

2단계 - 협상 전개 혹은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

3단계 - 체결 완료 및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

자료: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p. 31을 보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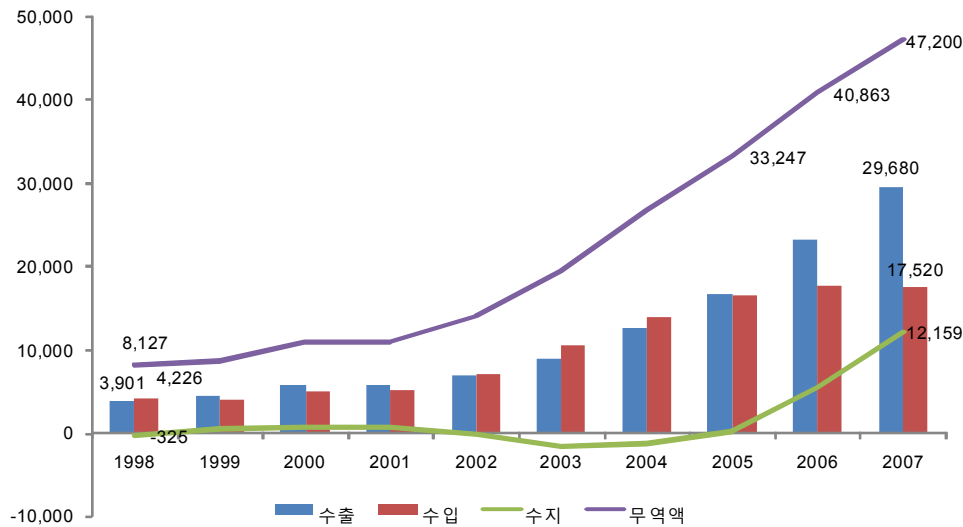
-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는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와는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임.
- 또한 호주, 아이슬란드, 페루, 노르웨이 및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지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과는 FTA 타당성 공동연구 및 진행 고려 단계에 있음.

나. 양국의 경제관계 현황

-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은 싱가포르 제2의 무역상대국이며, 싱가포르는 중국의 8대 무역상대국, 5대 대중 투자국임.
- 2007년 양국의 무역액은 472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중-ASEAN 상품 FTA가 발효된 2005년 이후부터는 더욱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과 무역흑자가 급상승하여, 2007년 중국의 대싱가포르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를 넘어섰음.

3) 中國自由貿易區服務網, 黨的十七大提出「實施自由貿易區戰略」, 2008. 9. 18.

그림 1. 중국의 대싱가포르 무역 현황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중국 상무부 외자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싱가포르의 대중 투자(실질이용액 기준) 누계액은 333억 9,000만 달러, 1만 6,615건에 달하였음.
- 이러한 대중 투자실적은 대중 투자국 중 홍콩, 일본, 미국, 한국(버지니아 군도 제외)⁴⁾ 다음으로 높은 것임.

2. 중·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가. 협정문의 구성

- CSFTA 협정문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기체결 양자 FTA 협정문과 유사하나, 특히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자연인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조항이 포함된 면에서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과 유사성을 보임.
-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지식재산권 부분은 누락되었고, 투자 장은 현재 중-ASEAN FTA에서 투자협상이 진행 중이고 2008년 12월 체결될 예정이므로 이에 같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4) 금액기준으로 대중 투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버지니아 군도와 10위를 기록한 케이만 군도 등은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으로 투자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투자국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표 2. 중·싱가포르 FTA 및 중국 기체결 양자 FTA 협정문의 구성 비교

	중·싱가포르(08)	중·칠레(05)	중·파키스탄(06)	중·뉴질랜드(08)
1장	최초조항	최초조항	최초조항	최초조항
2장	일반정의	일반정의	일반정의	일반정의
3장	상품무역	상품무역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상품무역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상품무역
4장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및 운용절차
5장	세관절차	원산지규정 관련절차	무역구제	세관절차 및 협력
6장	무역구제	무역구제	SPS	무역구제
7장	TBT 및 SPS	SPS	TBT	SPS
8장	서비스무역	TBT	투명성	TBT
9장	자연인 이동	투명성	투자	서비스무역
10장	투자	분쟁해결	분쟁해결	자연인 이동
11장	경제협력	행정	행정	투자
12장	분쟁해결	예외	최종조항	지식재산권
13장	예외조항	협력		투명성
14장	일반및최종조항	최종조항		협력
15장		서비스무역 보충협정(08)		행정 및 제도조항
16장				분쟁해결
17장				예외
18장			최종조항	

주: () 안은 체결 연도.

자료: 각 협정문에서 필자 정리.

나. 상품협정

■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해 2010년까지 9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품에 대해서는 발효시점인 2009년 1월부터 영관세를 적용하게 됨.

– 2009년 1월부터 싱가포르의 대중국 수출품 85%에 영관세가 적용되고, 2010년까지 추가적으로 10%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2007년 기준으로 무역액 180억 달러 수준임.

○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가공식품 및 전자전기제품 등임.

■ CSFTA의 상품무역 부문은 ACFTA 상품협상을 기본으로 하여 더 가속화된 관세양허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싱가포르는 CSFTA 발효시점인 2009년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중국이 ACFTA에 비해 더 가속화된 관세삭감을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최장 2015년까지 5~50%로 관세를 삭감하도록 하는 ACFTA의 민감품목군⁵⁾에 대해서 중국이 CSFTA에서 관세철폐를 허용한 품목은 하나도 없었음.
- 한편 ACFTA에서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일반품목군 2(normal track 2)⁶⁾는 HS8 단위 기준으로 226개 품목인데, 이 중 19개 품목을 제외한 207개 품목에 대하여 중·싱가포르 FTA에서 즉각철폐 또는 2010년까지 철폐를 허용하였음.
 - CSFTA에서 95%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으므로 ACFTA에 비해 5%에 해당하는 제품에 더 빠른 관세철폐를 실행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관세철폐의 가속화는 모두 일반품목군 2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 싱가포르는 발효시점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으나,⁷⁾ 중국은 ACFTA 당시의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 CSFTA에서는 관세철폐와 같은 파격적인 관세삭감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CSFTA의 상품분야 협상에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나. 서비스협정

1) 협정문 주요내용 및 특징

- CSFTA 서비스 협정문은 GATS와 ACFTA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상호인정 분야에서 여타 기체결 서비스 FTA보다 발전되었음.
- 대체적으로 CSFTA의 서비스 협정문은 중국이 체결한 칠레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중·뉴질랜드 FTA에 포함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와 양허표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⁸⁾에 관한 부분

5) ACFTA의 상품양허의 관세삭감 유형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 1, 2), 민감/초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됨. ACFTA에서 민감품목은 전체 수입액 10% 미만인 HS6 단위로 400개 품목 이하로 작성되었고 2018년까지 관세율을 5%까지 삭감하며, 이 중 100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2015년까지 관세율을 50%까지 삭감하도록 함.

6) 일반품목군은 전체 품목의 90%에 해당하며, 2010년까지 관세를 단계적으로 삭감하여 영관세가 되도록 하는 그룹(normal track1)과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150개 품목 그룹(normal track 2)이 있음.

7) 싱가포르는 상품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국가로서 양자 FTA 체결 시 관세를 100% 즉각 철폐하도록 하고 있음.

은 누락되었음.

- 서비스협정에서 최혜국대우는 미래에 체결될 다른 FTA에서의 더 높은 개방수준을 현재에 약속받는 것으로 중·뉴질랜드 FTA에서 처음 삽입되었는데, CS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음.
- 또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자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중-ASEAN 투자협상의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CSFTA의 실질적인 개방수준에 한계를 노정하였음.
- 한편 인정(Recognition)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의 여타 FTA가 인정에 관련된 선언적 조항만 명시한 데 비하여, CSFTA에서는 인정(66조), 인정협력(67조), 인정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68조) 조항을 삽입하여 상호인정협력에 있어서 양국의 더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회계, 감사 관련 분야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고, 분야를 건축과 공학 분야로 점차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 회계 및 감사 작업반을 포함하는 상호인정협력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Recognition Co-operation)를 설립하도록 합의함.

2) 양허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 CSFTA 서비스 양허안은 GAT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양국은 비즈니스 서비스, 병원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WTO와 ACFTA보다 더 진전된 양허안을 작성하였음.

① 병원서비스

- 중국은 지금까지 WTO나 기체결 FTA에서 병원서비스(hospital service: CPC 9311⁹⁾)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CSFTA에서 최초로 양허하였음.
-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해 국경간 공급(모드 1)과 인력이동(모드 4)은 개방하지 않았으나, 해외소비(모드 2)와 상업적 주재(모드 3)를 개방하였음.
-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자회사(Joint venture)형식으로 싱가포르 자본비율이 70%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을 설립하되, 총 수량 제한은 중국 측의 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의사와 의료진의 대다수는 중국인이어야 함.

8) 중·뉴질랜드 FTA와 중-ASEAN FTA 협정문 서비스분야에서는 양허표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협정 체결 3년 후 개방양허 내용의 수정 혹은 철회(modification or withdrawal)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CPC는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약자로 UN에서 사용하는 통계분류코드로서 서비스 분류에 자주 이용됨.

② 교육서비스

- CSFTA에서 싱가포르는 WTO나 기존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분야인 한의학 교육, 중국어교육 및 교육시험서비스(CPC 923900) 시장을 개방하였음.
- 다만 시장접근에 있어서 한의학 학위 취득 가능 인원수는 총 공급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았음.

다. 인력이동 분야

■ CSFTA에서는 인력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을 협정문의 한 장(Chapter)으로 다루고, 구체 양허안을 부속서로 첨부하였음.

- 중·뉴질랜드 FTA 협정에서도 인력이동 문제를 CS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부속서로 다룬 중·칠레 FTA나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의 시장 접근 제한 사항에 포함시킨 중-ASEAN FTA에 비해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CSFTA에서는 부속서 6에 아래와 같이 자연인의 임시입국을 양허하였음.

표 3. CSFTA 임시입국 양허표

	중국 측 양허	싱가포르 측 양허
사업방문자 (Business visitor)	최대 6개월	5년 복수비자 소지자 60일, 30일 연장 가능 기타 비자 소지자 30일, 30일 연장 가능
기업내 전근자(ICT)	3년 혹은 계약 기간 중 짧은 쪽	체류가능기간 2년, 8년까지 3년씩 연장 가능
계약서비스 공급자 (CSS)	1년 CSS 가능 서비스분야 회계, 치의료,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과 관련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여행서비스	90일, 90일 연장 가능 체류가능기간 90일,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90일 연장 가능 혹은 계약 기간 중 짧은 쪽

자료: CSFTA 협정문 부속서 6.

-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업방문자의 임시입국을 양허하였고, 싱가포르의 경우 CSFTA에서는 기재하지 않았던 ICT와 CSS에 관한 자격요건과 체류기간을 양허하였음.

- 중국의 ICT와 CSS 자격요건은 ACFTA와 동일함.
- 한편 급여요건(salary requirement)에 대해 부속서한을 통해 ICT와 CSS에 급여기준을 요건으로 둘 수 있음에 상호 합의하여 저급 인력의 무분별한 이동을 막는 장치로 삼았음.

4. 결론

- 대체적으로 CSFTA는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가속화, 일부 서비스 부문의 추가적 개방, 인력이동의 양허내용 확대 등 ACFTA보다 조금 더 진전된 개방을 이루었으나, 예상보다 개방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CSFTA 협상 개시 당시, ASEAN 내에서 가장 서비스가 발달한 국가인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진행함에 따라 ACFTA에서보다 큰 폭의 개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협상결과에서는 병원, 교육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상품분야에서도 ACFTA에서 중국의 민감/초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관세양허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2012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 2에 대해서만 관세양허를 하였으므로 관세철폐 기간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것 이외에 싱가포르가 중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인력이동 부문에 있어서 중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업방문자에게 임시입국을 허용한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ACFTA에서는 기업내 전근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입국의 범위를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CSFTA에서 개방의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중·뉴질랜드 FTA에 이어 CSFTA에서도 인력이동 부문이 강조되고 있는바, 향후 한·중 FTA에 있어서도 이 부문에 대한 면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필요함.
- 인력이동은 한·중 FTA 협상 시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협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양자적인 인력이동 양허 현황을 파악하여 한·중 FTA 협상 시 우리 측의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CSFTA 체결 이후 더 많은 ASEAN 국가들과 양자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ASEAN 지역 내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리더십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¹⁰⁾ 양자 FTA의 확대 추진을 통해 ASEAN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10) 일본의 경우 ASEAN 내에서 주요국과 양자적인 FTA를 먼저 체결한 후 ASEAN 전체와 일본식 FTA인 일-ASEAN 포괄적경제연대(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체결하는 순서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ASEAN의 선후발국간 경제격차로 인해 개별 협상이 효과적이나, ASEAN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ASEAN 전체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그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양희(2008)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유뿐 아니라 중국에 비해 뒤처진 FTA 추진 실적을 만회하고, 개별국에 대한 일본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ASEAN과 FTA를 맺은 것에서 더 나아가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체결한 것은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일본과의 경쟁적 동기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김양희(2008. 2),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09호.